

2019년도

2019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

▣ 회의일시 : 2019. 7. 12.(금요일),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비공개
---	-------------------------------	-----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비공개
---	----------------------------------	-----

2	‘호남검무’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공개
---	--------------------------	----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호남검무’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가. 제안사항

‘호남검무’의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요청(‘19.05.21.)에 따라, 해당 종목의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가 ‘호남검무’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19.05.21.) 하고, 지정 명칭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협의 요청을 해온 바, 이를 부의하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지정예고 현황

1) 지정명칭 및 보유자 인정대상자

- 지정명칭 :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호남검무’
- 보유자 인정대상자 : 김○○

2) 지정 배경 및 필요성(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 ‘19.05.08.)

- 호남검무(한진옥류)는 한삼춤, 맨손춤, 칼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짧은 칼을 각각 손에 들고 활달하고 풍성한 춤사위 및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추는 연풍태의 춤사위를 특징으로 함.
- 박영구류, 이대조-이매방류 검무와 계통이 다른 신갑도/이장선→한진옥→김○○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확실함.
- 이에 호남검무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을 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보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검무’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지정명칭	지정구분	지정일	보유단체(인정일)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단체	'67.01.16.	진주검무보존회 (‘86.11.01.)	○유○○ ○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기검무	단체	'11.06.17.	경기검무보존회 (‘11.12.06.)	○김○○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검무	단체	'01.02.23.	평양검무보존회 (‘01.02.23.)	○정○○ ○임○○

라. 검토의견

- 명칭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호남검무’의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사항 : ‘호남검무’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협의